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외적 일시 주차 허용의 법적 근거 신설〉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62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진료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자동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60호)은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일시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② (생략) <신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동차가 없거나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가족·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¹⁾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시 주차를 허용할 경우, 현장 혼선과 단속의 실효성 저하가 불가피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 여부와 탑승자 확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므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법률상 예외 해당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허위 주장이 발생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예외 차량 증가 시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관련 지침 개정, 행정해석 배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단속 공무원 대상 홍보 등 행정적 준비 사항이 많아, 충분한 기간 없이 시행될 경우 혼선이 예상므로, 시행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태료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법률 조문과 단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능한 해석으로,

1)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24. 6. 13, 의안번호 제444호)	활동지원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등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24. 6. 18, 의안번호 제602호)	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등

현장 단속 인력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예외 차량에도 과태료가 잘못 부과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주차표지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 운영 원칙과 충돌함.
- 또한, 주차표지 발급 대상 및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체계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주차 대상을 규정할
경우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
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